

EC 원산지 규정 해설

-EC 집행위의 공식 견해-

본회 통상과

1. 개요

원산지는 제품의 경제적 국적을 의미하며 이에 관한 규정은 특정 수출입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특허관세, 반덤핑이나 물량규제 등의 통상정책 수단, 기타(유럽개발기금, 공공조달 정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원산지 규정은 특혜와 비특혜 원산지로 구분된다.

2. 특혜 원산지 규정

1) 특혜 원산지 규정의 적용

관세 특혜와 관련한 것으로 EC와 상대국간 협의하에 설정된다 (EFTA, ACP, 지중해 연안국, 형가리 등 동구라파 국가)

그러나 GSP 특혜 같이 EC가 자의적으로 특혜 관세를 공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EC 각국의 속령이나 해외 영토에 대한 수혜 등도 있다.

특혜 협정으로, 수혜 대상국산 공산품이나 특정 농산물 등이 면세나 감세와 같은 방법으로 수혜를 보게 되는데 유형으로는 GSP 같은 일방적 특혜도 있지만 상호

적일 경우도 있다.

(상호적인 경우는 반드시 대칭적이지는 않다 : 이스라엘, EFTA, 사이프러스, 몰타 등)

2) 특혜 원산지 규정의 목적

특혜 원산지 규정의 존재 의미는, 특혜 대상국에 그 수혜를 한정하고, 제3국 제품의 이를 특혜 대상국 우회를 방지하는 데 있다. 또한 이러한 특혜 원산지 규정들은 상대국의 경제발전 정도나, 지정학적 위치, 정치적 관계 등에 의해 차이가 있다.

3) 일반 원칙(모든 특혜 대상국에 공통적으로 적용)

① 충분공정 조건(Sufficient Working & Processing)

특혜 대상국에서 충분공정이 있어야 하는 데 여기서 충분공정이란 사용된 모든 부품의 세번이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번의 구조가 원산지 확인의 목적만으로 구성되지 않았으며, 특혜 협정의 목적 또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게 되어있다. 단순한 세번 변경으로는 가격 부여가 불충분하여, 추가적인 특정 공정을 해

야하거나 혹은 일정 수준의 부가 가치 실현이 필요할 경우며, 세번 변경이 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부가가치 실현이나 특정 공정이 필요되는 경우이다.

② 누적개념(Cumulation)

특혜 대상국들간 부품 사용시 누적계산이 허용될 수 있다.

③ 직접수송(Direct Transport)

특혜 대상국으로부터 EC로 직접 수송되어야 하나 환적의 경우, 환적국 세관으로부터 제품저장 목적 이외의 가공이나 통관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Manipulation Certificate"를 발부 받아야 한다.

④ 원산지 증명서

세관 혹은 정부공인기관으로부터 원산지 증명서(Form A 혹은 EUR 1)를 발급 받아야 한다.

4) 특혜 원산지 정책에서의 차등 —상호누적(Bilateral Cumulation)

—EC & 지중해 연안국 : EC산 제품은 지중해 연안국에서의 충분 공정이 필요 없음

—완전누적(Full Cumulation)

—EC & ACP, EEA : 특혜지

역 안에서 수행된 공정은 수혜

국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

—대칭누적(Diagonal Cumula-

tion)—EC & 협가리, 체코,

폴랜드, 스로바키아 : 일개의

특혜지역 원산제품은 다른 특

혜지역에서의 충분공정이 필요

없음

—지역간누적(GSP Countries

Regional Cumulation)—

Asean, Andan : GSP 수혜

를 위해 Asean, Andan 회원

국간 부품 누적 허용(조만간

EC는 이를 지역과 공여국 개

념(Donor Country Content

System)을 도입하여 쌍방간

부품에 대해서도 상호 누적 허

용)

—기 타

- 0~10% 정도의 일반 허용
- 률(General Tolerance)

- 대체비율(Possibility of Alternative Percentage Rules)

-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서
- 발급 허용(Invoice Declaration)

- No Draw-Back Rule

특혜 원산지 규정들은 특혜를 위한 각각의 조건을 갖고 있는 반면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최종 중요 변형도에 기초하며 상호 협의 될 수 없는 절대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EC가 특혜 원산지 규정들을 통일하지 않는 이유이다.

3. 비특혜 원산지 규정

1) 적용

① 개요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통상정책

수단이나 조치들의 적용과 밀접하다(예 : 물량제한 조치 등 EC 일반 수입 규정 288/82, 1992. 2. 5) 미국과는 달리 EC는 원산지와는 무관하게 제3국산 수입품에 대해 GATT에서 통합된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EC는 모든 국가에 최혜국 대우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또한 무역통계나 유럽개발기금, 공공조달 등의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지며, 마찬가지로 특혜관세협정 범주에 속하지 않는 제3국과의 수출에도 적용한다.

② 반덤핑 정책에서의 원산지 규정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최근의 반덤핑 관세 우회 방지법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데, 우회방지 규정 입법은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 완제품 수입을 꺼려하는 대신 개별부품을 들여와 조립하여 A/D 관세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경우 제품조립에 사용된 모든 부품의 60% 이상이 덤프국가산일 경우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것인데, 이는 바꾸어 말해 덤프국가 이외의 어떠한 나라산 부품이라도 총 40% 이상이 되면 덤프관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40~60% 비율개념이 원산지 규정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원산지 규정은 단지 덤프국산 부품을 분별하기 위해 적용할 뿐이

며, 결과로 특정부품이 60%나 40%중 어느 범주에 속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한다.

2) 비특혜 원산지 규정의 본질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비정치적 으로서 형평성 및 기술적인 본질을 갖고 있으며 명료성을 위해 유럽 사법재판소에 그 법적 해석이 위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규정들은 EC 내 수입과 EC 수출자들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바, 균형이 있고 편향되지 말아야 한다.

3) 교또협약

EC는 1973년 교또협약에 대한 Origin Annex D1 원칙을 적용한다(국제 세관 단순화 및 표준화)

동협약은 최종 중요 공정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 EC는 이 개념을 "Regulation 802/68" (EC 일반 원산지 규정)에 이미 설정한 바 있으며 범세계적 적용을 위해 교또협약을 근간으로 사용되었었다.

4) 분류기준

EC 원산지 규정(Regulation 802/68)은 원산지 자격 수여를 위한 공정으로서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해당 생산제품을 위해 설비된 공장에서 공정이 수행되고, 전혀 새로운 제품의 생산을 결과하거나 제작의 중요단계를 나타내는 경우 등의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5) 최종 중요 공정도 기준

최종 중요 공정도 기준은 생산에 2개국 이상이 참여했을 경우

원산지를 결정해 주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기술적 검증으로서, 최종 중요 공정이란 제품이 공정을 수행하기 전에는 없었던 특징을 새로이 갖게될 때의 공정을 의미하며, 따라서 상당한 수준의 질적변화를 필요로 한다.

조립의 경우, “공정의 중요도”란 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모든 공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져야 한다.(Finanzgericht Kassel

Case : 독일 법원은 전동 타이프 라이터의 조립과 관련 비록 PCB 조립을 독일내에서 수행했더라도 원산지 자격부여에 부적합한 단순 공정으로 판정)

EC는 반도체(IC)의 경우 확산(Diffusion) 공정에 대해 원산자격을 부여했는데 당시 EC는 가장 중요한 공정(The Most Substantial) 보다는 최종 중요 변형(The Last 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을 택했다.

그러나 “최종 중요공정”은 이 경우 “가장 좋은 변형”을 포괄하고 있다. EC는 복사기의 조립과 하네스, 드럼, 롤러, 사이드플렛 등의 제작으로는 원산지 자격이 없음을 판정했었다.

볼베어링의 경우 열처리, 그라인딩, 내부광택 등의 공정이 따르는 조립에 대해 원산지 자격을 부여했다.

TV, 라디오, 테이프 레코더 등 그 조립의 복잡성으로, 최종 중요 공정은 부가가치 기준의 의미로 바꾸어 나타낼 수 있다.

동부가가치 접근법은 교또 협약과 유럽 사법재판소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4. 비특혜 원산지 규정의 절차

1) 회원국 의무 사항

비특혜 원산지 규정의 적용은 통상 회원국 세관 당국의 관할하에 있다(EC 차원의 세관 미존재) 과거 EC 내 통관과 관련한 수입품의 동등대우가 관세동맹(Customs Union)의 두드러진 특징이 되어왔었는데 역내 시장 완성으로 이러한 원칙은 좀더 강화되어야 한다.

2) 원산지 위원회의 역할

EC 원산지법의 일괄된 적용과 원산지 검사를 위임받고 있는 원산지위원회는 EC 일반원산지 규정(No. 802168) 제12조에 의해 설립되었다.

위원회의 장(長)은 집행위 원산지 담당국이 맡고 있으며, 각 회원국 세관관리 및 경제담당 부처관리들로 구성되어 평균 매6주 단위로 회합을 갖고 있다.

3) 원산지 위원회의 절차

① 조회(Reference)

회원국이나 수입업자 등은 원산지 결정문제에 직면할 경우 원산지 위원회에 조회할 수 있으며 수입자의 경우 항후 제조할 상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조회가 가능하다.

EC 집행위도 반덤핑 Case 등の場合 원산지 문제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원산지 담당국

EC 집행위내 원산지 담당국(The Origin Division)도 원산지 조사를 시행하여 이에 대한 결과와 의뢰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과정중 원산지국은 집행위내 여타 부처들에게 협조받을 수 있으며, 생산공정에 대한 현장 실사도 수행되어질 수 있다.

③ 비공식 절차

위원회가 집행위의 결정에 만장 일치로 동의할 경우 추가조치(비공식 절차) 없이 즉시 시행되며 대개의 경우 이와같이 결정되어진다.

④ 공식결정

위원회가 집행위의 제안에 가중 다수결로 동의할 경우 집행위 규정(Commission Regulation)을 통해 시행되며 이는 관보(Official Journal)에 게재된다. 만약 집행위 제안이 동의 되지 않을 경우, 집행위는 그 수정본을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여기서 이의가 없을시 집행위 규정으로 채택된다.

⑤ 기타

원산지 규정은 공식 또는 비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적용될 수 있다.

4) 사법 재심

수입자는 회원국 세관 당국의 결정에 대해 유럽 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전에 해당국 법원의 1심 판결을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수입자가 집행위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게될 경우에도 동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5. 비특혜 원산지 규정의 국제적 표준화

1) EC의 역할

우르파이 라운드 초창기에, EC는 원산지 규정의 범세계적 표준

화가 수출, 수입자 등 모든 관계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여겨왔던 국가들 중 하나였으므로 원산지 규정에 관한 GATT 합의문 초안에 동의했다.

2) GATT 합의문 초안

원산지 규정 적용에 관한 공고, 재심, 협의, 분쟁해결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특기할 것은 개별 제품에 관한 원산지규정의 표준화인데 이것이 향후 몇년 내에 정리되어야 할 관세법에서 가장 야심차고도 어려운 국제적 작업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비록 우르파이라운드가 아직 타결되지는 않았어도 EC는 이 문제를 연구해왔으며, 농산물 부문에서의 EC측 입장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3) 산업부문 표준화에서의 EC

표준화의 가장 어려운 부문이 충분한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조건으로하는 산업부문이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EC가 GATT나 관세협력위원회(Customs Cooperation Council) 협상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집행위는 세번변경이 “충분변형”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인데, 한편 그러한 가운데 EC는 표준화 작업을 정치적으로 이용치 말것을 요청할 것이다. 편견되고 기회주의적 접근이야 말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사형선고가 될수 있는 것인데 이는 표준화로 말미암아 원산지 규정이 무용(無用)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준화는 단일성, 적합성, 공평성을 보장해야 하며, 통상정책

수단이나 국제교육에 규제적, 왜곡적인 영향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한편 이는 반덤핑이나 물량규제 같은 통상정책 수단을 강화키 위해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표준화의 결과 원산지 규정이 그러한 목적들로 더이상 사용키 어려울 경우 이를 대신할 새로운 도구가 고안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EC는 이러한 관점에서 표준화 작업시 원산지 규정의 목적이나 기술적 특징들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통상정책의 조치들이 원치 않았던 효과를 초래할 경우 이들은 수정되어져야 하나, 원산지 규정은 당장 내일 변화될 수도 있는 일련의 통상적 시나리오의 조건들에 따라 조작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4) 규정의 형평성

EC는 표준화시 원산지 규정의 형평성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다.

5) 비특혜 목적의 단일규정

EC는 표준화 결과를 모든 비특혜 목적에 적용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표준원산지 규정을 원산지 표식이나 최혜국 대우(MFN Treatment)에만 한정하는 것은 원치않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국제교역에 대한 표준화의 이익을 삐감할 것인데 이는 많은 수의 계약국과, 그 중에서도 EC는 MFN 대우시 원산지에 무관하게 적용하는 자유원칙(Iliberal Approach)으로 원산지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6) 표준화

① 세번변경의 의미

세번변경(Change of Tariff Heading: CTH) 기준은 여러 경우에 있어서 너무 엄격하거나 또는 너무 불충분 기준으로 여겨지는데 그간 EC는 CTH 기준을 기본으로 하는 특혜 원산지 규정 운영에서의 경험으로 이를 보완할 추가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HS 세번중 기계류에서는 첫 4 단위의 세번 변경으로 원산지 자격 수여의 충분 조건이 될 수 있다.

| | |
|-----------|------------|
| 8407~8408 | 엔진 |
| 8422 | 식기세척기 |
| 8425 | 승강기 |
| 8426 | 크레인 |
| 8427 | 트럭 |
| 8428 | 리프트·에스컬레이터 |
| 8456 | 공작기계 |
| 8449 | 타자기 |
| 8470 | 계산기 |
| 8471 | 컴퓨터 |
| | 복사기 |
| 8519 | 턴테이블 |
| 8520 | 테이프 레코더 |
| 8521 | VCR |
| 8527 | 라디오 |
| 8528 | TV |

자동차 조립으로 원산지 자격이 있는지 ?

만약 “세번변경”이 6째 자리까지 적용된다면 기계류에 포함되는 모든 제품이 단지 조립 공정만으로도 원산지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EC는 이러한 스크류드라이버 공정(=단순 조립)으로 우회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② 부가가치 기준

CTH에 대한 보완책이 바로 부가가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장·단점은 잘 알려져 있다. 부가가치 접근법은 비교적 간단한 공식(완제품의 공장도 가격—수입 부품의 통관가격)을 사용함으로서 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잇점이 있다. 한편 단점으로는 EC와 저임국가들간의 제조비용과(* 부가가치 접근은 저임의 부품공급국에게 유리하다) 이윤상승 (Inflated Profits), 가격조작 (Manipulated Prices), 내부자 거래가격(In-House Pricing) 환동변동, 연말할인(Discounts at The End Of The Year) 등의 차이에 있다.

EC와 수혜국간의 특혜 무역시 상당부분이 부가가치 기준에 근거한 원산지 규정이 수반되고 있으

며, 그동안 수년간의 경험으로 보아 이 기준이 운용하기 단순하고 도명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세번분류의 불일치

많은 기업들이 비특혜 원산지 규정에서 세번의 효율성에 관해 불만을 가져 왔는데, 바로 세번분류해석(Classification Interpretation)의 불일치에 대한 우려이다. 이러한 경험은 EC 집행위 뿐만 아니라 미국세관 역시 겪어왔다.

④ 대체 비율 규정

첨단이나 화학제품 등과 같이 복합성을 갖고 있는 제품은 세번 변경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체비율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 EC는 EEA를 위해 이와 같은 근거의 특혜 원산지 규

정을 갖고 있다.

⑤ 부가가치 기준의 근거

부가가치 기준은 없어서는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문제는 미국의 직접 제조비 접근법이냐 혹은 EC의 공장도 가격 기준을 적용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다.

EC의 규정은 간접비, 이윤 등 모든 직·간접 제조 비용을 고려하고 있어 운용하기가 간단한 반면, 미국 접근법은 제조 직접비용만을 포함하므로서 좀 더 타당성을 갖고 있으나 실제 적용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보인다.

⑥ 결론

EC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것이 틀림없다.

다만 표준화에 주어진 기간이 너무 의욕적인 면이 있으나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믿는다.

1994년 전자산업전망 세미나 개최안내

- 목 적 :** 최근의 전자산업동향 분석 및 '94년도의 경기전망을 업계 및 관계기관의 전문가와 함께 집중조명하여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업계의 대응방안을 모색코자 함
- 참석대상 :** 전자업계 대표 및 경영기획 담당임직원, 관련기관 인사 등 300여명
- 개최일시 :** 92. 12. 3(금) 08:00~11:00
- 장 소 :**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3층(다이아몬드볼룸)
- 세미나 내용 :**

| 순 서 | 발 표 내 용 | 발 표 자 | 비고 |
|-----------|---------------|-------------------|-----|
| 개 회 사 | 본회 | | |
| 전자산업동향보고 | 전자산업의 동향과 전망 | 본회전홍공사 | 10분 |
| 부문별주제발표 | '94년 국내외 경제전망 | 한국은행 조사1부 이상현 부부장 | 20분 |
| | '94년 세계전자시장전망 | 삼성경제연구소 강양기 실장 | " |
| | '94년 가전산업 전망 | 금성사 이병성 이사 | " |
| | '94년 컴퓨터산업 전망 | 대우통신 김천명 상무 | " |
| | '94년 통신산업 전망 | 금성통신 오세희 부사장 | " |
| | '94년 반도체산업 전망 | 현대전자 장홍조 전무 | " |
| | '94년 부품산업 전망 | 발표자 및 참석자 | |
| 질 의 및 응 답 | | | |

- 문의처 :** 본회 기획과(Tel : 563-7377)